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6 .14  
제출자 : 이경진의원외 6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1년 6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없 음

# 심사계획

## 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심사안건

-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-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농업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00년 6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

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6.21(수) (10:00)	제1차조례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.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.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.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7.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	